

# CONSTRUCTION NEWS

## 경기회복 위해 투자 총력

### 정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확정

정부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공공부문 투자 확대, 종합투자 계획 본격화,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국내 기업의 수도권 첨단산업 투자를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수도권에 대규모 관광단지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 보증, 감리 등 정부계약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오는 9월 중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재원상 문제가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조정, 민자유치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환경 문제와 지사체간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이해 당사자 협상 등을 통해 적극적인 해결을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천 ~ 상주, 수원 ~ 광명 제2영동 등 3개 민간제안 도로사업의 연내 시행을 위해 오는 10월 제3차 제안공고에 나서고 건국대 · 경희대, 대전외국인유학행 기숙사 등 3개 사립대학의 민자유치를 추진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첨단투자에 대한 규제개선을 선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사안별 · 개별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반적인 허용여부는 오는 12월 제2차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에 포함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추진중인 테마파크 등과는 별도로 수도권에 디즈니랜드와 같은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환경보전대책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며 골프장 건설 규제개선 방안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해 오는 9월 중에는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저가낙찰제의 덤핑방지 기능 제고, 적격심사제의 변별력 강화, 덤핑입찰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보증심사기능 강화, 감리자의 지위 · 책임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중인 정부계약제도 개선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오는 9월 중에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이어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나설 계획이어서 연말 계약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시중자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 · 운용

하는 간접투자기구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소요되는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해 주택공사에게 장기채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분야 R&D 투자를 확대해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시공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 아파트 하자기간 위헌 제청

### 서울고법, 주택법-집합건축법과 상충

개 정돼 시행에 들어간지 2개월여 밖에 안된 주택법의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기간 조항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 6부가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주택법 46조1항과 중대한 하자에만 손해배상을 인정한 46조3항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위헌 제청 이유로 주택법 집합건물법 제9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이입법 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법 집행 가능성도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관련, 주택법은 시행령에 부위별 주택부품의 내구수명 등을 고려, 최고 10년까지 차등을 둔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은 주택법을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주택법 규정을 사문화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은 부위에 상관없이 10년의 하자담보 책임을 져야 했고 이는 사업주체의 경제적 부담과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영광등은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되고 벽지도 그 이상을 넘기기가 어려운게 현실인데 일률적으로 10년간의 하자담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 지난해 12월 29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관한 집합건물법을 배제하고 주택법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이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로 부품의 내구수명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설정하는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건교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 본회의를 거

쳐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집합건물법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을 뒤 주택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택법의 적용을 배제한 집합건물법과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배제한 주택법과의 상충문제는 상존해 있었다.

재판부는 이같은 문제를 위한 심판대에 올려 놓았다.

김태환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위헌 심판에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현행 집합건물법의 경우 공동주택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때에는 공사의 종류나 내용 등에 관계없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민법을 준용하여 10년으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내구연한이 5년 밖에 안되는 영광등을 10년이나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택법에서도 내력구조물 등 시설물 안전에 중요한 곳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과 마찬가지로 10년까지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결정해 놓았다고 말했다.

주택법은 건설공사의 기술적인 문제 등을 포함해 부품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위헌 판정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선진 외국에서도 구조부의 특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해 놓은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 건설현장 중복점검 없어진다

### 국조실,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추진

오는 2007년부터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중복될 경우 건설업체가 해당 기관에 공동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피조사기업이 행정기관에 조사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위법사항이 드러나지 않는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한 당해 연도 내 재조사도 금지된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행정조사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 국회에 상정한 후 2007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동일한 기업에 대한 기관조사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각 행정기관장이

# CONSTRUCTION NEWS

내부 조정을 통해 관련 조사를 공동조사 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의무화 했다.

행정조사는 정부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기업·개인을 상대로 한 조사·점검을 포괄하는 것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등도 모두 포함된다.

국조실은 특히 피조사 기업이 행정기관의 중복된 조사에 대해 기관간 상호 조율을 통해 동일한 시기에 공동조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조사기피 및 지연 목적 등의 혐의가 없는 한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국조실은 또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12월 말 다음해 시행할 행정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수시조사는 특정 사안이 없는 한 자제하도록 했다.

또 행정조사의 목적, 법령준수 실적 등을 고려해 조사대상자 선정의 객관성도 제고하도록 규정했다.

국조실은 나아가 조사착수 이전에 조사대상기업에 조사목적, 조사내역, 조사기간 등을 사전통지함으로써 피조사기업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사전통지를 받은 기업은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통해 조사연기 신청은 물론 조사시행 담당자에 대한 기피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또 변호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입회시키거나 조사과정을 녹음, 녹화함으로써

불합리한 조사에 대해 법적 대응할 수 있는 여건도 구비된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자가 조사내용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시 행정조사를 감면하는 자율신고제도가 신설된다.

국조실은 이외 행정조사 결과의 기업 통지기한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조사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행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규제개혁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는 노동부, 건교부, 지자체 등 여러 부처에서 중복 시행됨으로써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건설현장 점검 등의 각종 행정조사절차를 간소화하고 피조사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안이다”라며 “법령 시행 시점까지 1년여의 기간 동안 시행령, 시행규칙은 물론 기관별 행정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중복조사를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 기술자 허위서류 사라진다

### 건교부, 경력인정 기준 제정

오는 10월부터 건설기술자의 경력 확인이 더욱 엄격해져 허위서류

제출 등의 부작용이 방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자 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인 건설기술인협회, 건설감리협회, 건축사협회, 엔지니어링협회, 건설컨설팅협회, 측량협회 등 6개 기관의 사전준비 등을 위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된 기준은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대한 검증을 강화, 근무처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공적인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졸업증명서 등 학력, 교육훈련·자격증은 경력신고 후 30일 이내에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관계기관에 확인하도록 했다.

지금은 수탁기관에 경력 등에 대한 관계기관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확인에 필요한기간은 명시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기 이전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며 신고한 내용대로 발급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건교부는 근무처와 관련된 서류는 신고 당시 제출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자격증은 신고 후 확인기간을 명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수행능력 또는 시공능력 평가에 필요한 기술자의 참여경력은 발주청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평가자료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설계 등 용역입찰이나 시공능력평가 등



을 위해 제출되는 기술자의 경력증명서가 허위 기재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됨에 따라 경력확인 절차를 크게 강화한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술자의 경력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경력관리 수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 운영해 통일성이 결여된데다 기술자의 신고내용을 근거로 경력관리 및 각종 증명서를 발급, 거짓 신고 등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며 제정된 기준에 따라 이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특급기술자 '기술사만 가능'

### 정부, 자격제도 혁신방안 마련

**인** 정기기술자로 불리는 학·경력 기술자제도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전면 정비된다.

이에 따라 기술사만이 특급기술자로 인정받게 되며 학·경력자는 중급 이상의 기술자가 될 수 없게 된다.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격제도 혁신을 위한 종합 정비방안'을 확정, 법령개정 등의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정비방안은 자격제도가 종목의 과다와

자격검정 전문인력의 부족, 국제적인 통용 기준과의 괴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책을 담고 있다.

우선 건설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수 기술사의 육성 및 활용 방안에서는 학·경력 기술자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993년부터 도입한 학·경력 기술자제도가 부족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순기능을 해왔지만 △기술자 등급구조의 불균형 심화 △기술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 장치의 결여 △자격취득 없이 기술자가 될 수 있는데 따른 국가기술자격제도 위축 우려 △국가간 상호 인증시 외국기술자에 대한 경쟁력 확보 상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학·경력 기술자제도를 통해 학·경력 기술자가 배출되지는 않도록 하되 기존 학·경력 기술자의 법적 지위는 경과규정을 통해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술등급제는 존치하되 기술사만 특급으로 인정하고 초급에 한해 학·경력기술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학기술부의 엔지니어링진흥법, 건교부의 건설기술관리법, 산자부의 전력기술관리법, 정통부의 정보통신공사법, 행자부의 소방시설공사법 등을 내년1분기까지 개정, 이같은 개선방안을 담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기술사만이 특급기술자로 인정받는다.

석·박사와 2년 현장경험 이상의 대졸자와 전문대졸(4년), 고졸(6년이상) 등 학·경력자는 초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령 정비가 완료된 이후 신규로 특급은 물론 중급 및 고급기술자로 인정받는 것은 원천 봉쇄된다.

또한 중급과 고급은 기사와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인정받게 된다.

한편 기술사 선발 및 육성·관리가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선발작업은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이 총괄하고 육성·활용시책은 과학기술부가 담당하며 기술사 활용 및 사후관리는 건교부 등 154개의 관련 부처·청이 실무를 맡는 체계를 개선, 검정·육성·관리 단계에 있어 과기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기술사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 기술사 종목의 신설 등에 대해서 과기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조정, 노동부 장관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기술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계속교육, 경력관리 등 우수 기술자 양성·관리에 관한 과기부의 총괄·조정 근거가 마련되며, 위헌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별사업법에 기술사 고유의 업역설정 등

# CONSTRUCTION NEWS

기술사의 법적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개별 사업법을 고쳐 공공의 안전과 재산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업무는 반드시 기술사의 관리·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하고 기술사 업무침범에 대한 배타적인 벌칙조항을 삽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등록기준은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를 보유하도록 변경하고 PQ심사 등 입찰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에서 기술사 보유업체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주관하는 테스크포스를 별도로 만들어 연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기술사에 대한 적절한 육성·관리를 위해 계속교육제도 도입의 근거를 기술사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 계속교육 현황 등에 대한 DB를 구축, 관리하기로 했다.

## 공사비 50% 이상 증액 설계변경 금지

### 규개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의결

지난 7월 말부터 증액되는 공사비가 당초 계약액의 절반 이상이면 설계변경이 금지되는 등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건이 강화됐다.

또 수의계약시 1인 견적서에 의한 가격 결정대상이 1천만원 이하로 축소되고 견적서 제출시 접수가 의무화되는 등 수의계약 관리체계도 개편된다.

아울러 물가변동률 요건이 3%로 완화되고 산정시점과 경과기준도 각각 입찰일과 90일로 조정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경제1분과위원회에서 재경부가 제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규제조항은 시행령 21조의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정비규정과 76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및 요건 명확화 규정 등 두 건이다.

세부적으로는 △대의개방금액(2.1억원) 미만 물품 및 용역조달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한 임의조항 △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입찰·계약서류 위변조 및 허위제출자 뿐 아니라 전자입찰 공인인증서를 추가하고 뇌물 관계공무원 범위에 감독 전문기관의 감독자, 검사 전문기관의 검사자, 기타 입찰·계약관련 위원회 내 민간인 추가조항 등으로 모두 원안 의결됐다.

경제1분과위 관계자는 “참석위원들 대부분이 개정안내 규제요소가 적을 뿐 아니라 상정된 두 개 안에 대해서도 적정수준 이라는데 공감했다”며 “이에 따라 심의가 쉽게 마무리됐고 중요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본회의 상정 없이 곧바로 재경

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개위는 이번 개정안내 기타 조항들에 대해서는 규제성격이 미약해 별도의 심의 없이 모두 원안대로 동의했다.

개정안 내 기타 주요 조항으로는 △ 분기별 수의계약 발주계획과 입찰결과 및 계약변경 내역의 사전공개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금액이 50% 미만인 경우만 설계변경 인정 △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로 증액규모가 공사비의 10% 이상인 경우 계약심의회, 예산집행심의회,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명문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식 명확화(일반공사-설계변경 당시 기준단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간 합산액의 50%, 턴키·대안공사-설계변경 당시 기준단가, 산출내역서상 단가간 합계액의 50%) △수의계약 1인 견적서에 의한 가격결정 대상 축소(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및 견적서 제출시 접수의 무 명문화 △ 계약금액 조정기준 변경(계약체결일, 60일 이상 경과, 품목조정률 5% 이상 상승 → 입찰일, 90일 이상 경과, 품목조정률 3% 이상 상승) △ 물가변동률 산정시 품목조정률을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시에만 지수조정률 적용 △ 매 계약건에 대해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한 계약실적 보고 의무화 △신기술인증제품에 대한 자재관급 추가 등이다.